

발행인 : 용산구청장
 편집인 : 홍보담당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34-87)

용산구보

제 1405 호 2011. 9. 23.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관의 장

◎ 고 시
 고시 제2011-54호 :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3

◎ 공 고
 공고 제2011-522호 : 용산역전면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인가에 따른 공람공고 7
 공고 제2011-524호 :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9

◎ 인사발령
 발령 제2011-112호 : 인사발령(신규 및 복직) 11
 발령 제2011-114호 : 인사발령(전직 및 휴직) 11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용산구 홈페이지 <http://www.yongsan.go.kr>(열린구청 → 행정정보 → 용산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199-6700 / 전송 : (02)2199-8304
- 구보발행일은 매주 금요일(필요시 수시 발행)이며,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

D-3 접수 →
 D-2 편집·교정 →
 D-1 인쇄·제책 →
 D 보급·배부

※ 문서시행일은 구보발행일자가 아닌 문서별 게재일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람										



고 시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1-54호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380호(1978.11.30)로 재개발구역지정, 건설부고시 제347호(1979.9.24.)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121호(1993.4.17)로 재개발사업계획(건축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1997-3호(1997.1.22)로 사업시행인가 및 같은 고시 제1997-80호(1997.12.26.)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같은 고시 제2001-2호(2001.2.9), 같은 고시 제2008-47호(2008.8.22), 같은 고시 제2010-49호(2010.10.1)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동자동 제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경미한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경미한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3일

용 산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동자동제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3. 사업시행위치 : 용산구 동자동 37-85번지 일대

4. 사업시행면적 : 8,003.2m²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덕유건설(주) 대표 김송락,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 대표 김송락

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75-8 송원빌딩2층

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1. 09. 23.

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요지

가. 대지 및 건축시설의 규모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건폐율 (%)	연면적 (m ²)	용적률 (%)	층수 (지상/지하)	용 도
5,946.5	2,970.95	49.96	92,728.33	989.87	27/7	업무,근생, 전시시설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구 분	규 모(m ²)	관리처분대상자별 내역				비고
		토지등소유자	보류지	일반분양	임대	
업무시설	83,031.7021	33,948.3997	-	49,083.3024	-	-
근생시설	8,074.7737	1,350.9218	262.2086	6,461.6433	-	-
전시시설	1,621.8542		-	1,621.8542	-	-
합 계	92,728.3300	35,299.3215	262.2086	57,166.7999	-	-

다. 신설 또는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1)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연번	권리의 소재지	시설의 종류	무상양도면적(m ²)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1	동자동 37-97	도로	70.1	70.1	국토해양부	
2	동자동 37-112	도로	311.6	311.6	국토해양부	
3	동자동 38-6	도로	41.1	41.1	국토해양부	
4	동자동 39-1	도로	26.4	26.4	국토해양부	
계			449.2	449.2		

2)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관리청에 무상귀속)

연번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소유자
			공부상면적	편입	
1	동자동14-157	도로	4.00	4.0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
2	동자동14-159	도로	2.00	2.0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외1인
3	동자동14-169	도로	5.30	5.3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
4	동자동14-183	도로	16.50	16.50	(주)우리은행
5	동자동14-238	도로	197.10	197.10	(주)우리은행
6	동자동14-240	도로	50.30	50.3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
7	동자동14-241	도로	64.00	64.0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
8	동자동14-242	도로	33.70	33.7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외1인
9	동자동14-243	도로	32.10	32.1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외1인
10	동자동14-244	도로	64.40	64.4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외1인
11	동자동14-245	도로	15.10	15.1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외1인
12	동자동14-246	도로	65.90	65.9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외1인
13	동자동14-247	도로	158.60	158.6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
14	동자동35-203	도로	92.40	92.4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외1인
15	동자동36-50	도로	391.80	6.20	동부건설(주)
16	동자동37-116	도로	134.00	134.0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
17	동자동37-119	도로	27.10	27.1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
18	동자동37-124	도로	97.90	97.9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
19	동자동37-125	도로	4.90	4.9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
20	동자동37-126	도로	3.60	3.6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
21	동자동37-127	도로	16.20	16.2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
22	동자동37-135	도로	44.40	44.4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
23	동자동37-137	도로	66.80	66.8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외1인
24	동자동37-138	도로	30.80	30.8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
25	동자동37-139	도로	43.20	43.2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

연번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소유자
			공부상면적	편입	
26	동자동37-140	도로	49.20	49.2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
27	동자동37-142	도로	0.10	0.1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
28	동자동37-146	도로	5.00	5.0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
29	동자동38-16	도로	33.60	33.6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외1인
30	동자동38-17	도로	126.70	126.7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외1인
31	동자동38-18	도로	109.40	109.4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
32	동자동38-19	도로	33.20	33.2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외1인
33	동자동39-14	도로	11.20	11.2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외1인
34	동자동39-15	도로	64.40	64.4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외1인
35	동자동39-16	도로	186.60	186.6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
36	동자동40-6	도로	7.90	7.9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외1인
37	동자동40-8	도로	8.60	8.6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외1인
38	동자동41-12	도로	144.30	144.30	동자프로젝트금융투자(주)외1인
계			2,442.30	2,056.70	

라.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등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관계도서 : 생략(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2199~7404). 끝.

공 고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11-522호

**용산역전면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인가에
따른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7-51호(2007.9.21)로 사업시행인가되고 용산구고시제 2010-55호(2010.11.8)로 사업변경인가, 용산구고시제 2011-44호(2011.08.24)로 사업 변경인가된 용산구 한강로2가 342번지 일대 용산역전면 제3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용산역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변경인가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하고 관계서류를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용산역전면 제3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변경인가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우리구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1년 9월 23일

용 산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용산역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용산구 한강로2가 342번지 일대
- 면적 : 24,788.0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용산역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주소 : 한강로3가 40-604 농협중앙회 한강로지점 전면3층(전화 793-0031)

라. 변경내용

구 분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변경전	12,019.90㎡	205,550.89㎡	49.74%	987.12%	149.83m
변경후	12,019.90㎡	205,964.60㎡	49.75%	987.13%	149.93m

마.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판매시설 비율축소(변경전 25.90% → 변경후 18.97%)
- 업무시설 일부 오피스텔 계획

구 분	업무시설(오피스)		판매시설	공동주택	기타시설	합 계
변경전	90,634.30㎡		53,237.81㎡	61,343.57㎡	335.21㎡	205,550.89㎡
변경후	업무시설(오피스)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공동주택	기타시설	합 계
	62,727.65㎡	42,622.21㎡	39,073.28㎡	61,243.67㎡	297.78㎡	205,964.60㎡

바. 공람기간 : 2011. 9. 23. ~ 2011. 10. 07.

사. 공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전화 2199-7403)

아.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11-524호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차량초과 자동차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등록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이후 관련법규에 의거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11. 09. 23 ~ 2011. 10. 07(15일간)

2. 공고내역

자동차 소유자			이해관계인	이해관계내용	송달지
차량번호	성명	주소			
서울6크 1583	최신화 690818-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9-30-지층	이진영 321109- *****	자동차 저당권설정 · 을부번호:1124-2006-002739 · 설정일자: 2006.03.27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143-4

3. 기타사항

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7호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경과를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제3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예고통지를 하오니, 2011. 02. 04까지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 나. 이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자동차는 말소등록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구청 교통행정과(☎02-2199-77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23일

용 산 구 청 장

인 사

인사발령(신규 및 복직)

【발령 제2011-112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김연진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이촌제2동 근무를 명함	신	규
[발령일자 : 2011. 9. 17日字]				
1	장수연	복직을 명함	전 산 정 보 과	지 방 전 산 주 사 보
[발령일자 : 2011. 9. 19日字]				

인사발령(전직 및 휴직)

【발령 제2011- 114호】

[전 직]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유준홍	기능8급지방사무실무원(필기)에 임함	자 치 행 정 과	기 능 8 급 지 방 방 호 원
[휴 직]				
1	김미랑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휴직을 명함 (기간 : 2011.9.22 ~ 2012.9.21)	주 민 생 활 지 원 과	지 방 행 정 주 사 보
[발령일자 : 2011. 9. 22日字]				